

항공기술교육원 교육평가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교육평가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 항공정비사과정 교육생에 대한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공정비사 과정 지정기준(별표12)의 교육과목 및 시간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과 목	국토부 세부과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	
		학과시험 과목	실기시험 과목
항공 법규	‘국제항공법	항공법규	-
	국내항공법		
	항공정비관리	항공기정비일반	-
정비 일반	수학·물리	기초공학	-
	항공역학	항공역학	-
	항공기 도면	항공정비실무	항공기정비실습 I
	검사원리 및 기법		
	안전 및 지상취급과 서비스 작업		
	항공기 중량 및 평형관리	항공기기체수리	항공기체실습 I
	항공기 재료, 공정, 하드웨어		
	항공기 세척 및 부식방지		
	유체 라인 및 피팅		
	일반공구와 측정공구	항공정비인적능력	-
	인적성능 및 한계		
항공 기체	항공기 구조	항공기기체 II	항공기기체실습 I
	항공기 천, 외피, 목재와 구조물 수리		
	항공기 금속구조 수리		
	항공기 용접		
	침단 복합 소재	헬리콥터일반	헬리콥터일반실습
	항공기 도색 및 마무리		
	헬리콥터 구조 및 계통	항공기기체 I	항공기계통실습
	항공기 착륙장치 계통		
	항공기 연료계통	항공기 공유압장비	항공기 공유압장비실습
	화재방지, 제·방빙 및 제우계통		
객실공조 및 공기압력 제어계통			
항공기 유압계통			

과 목	국토부 세부과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	
		학과시험 과목	실기시험 과목
항공 발동기	왕복엔진 일반 및 흡·배기계통	항공기동력장치 I	항공기동력장치실 습 I
	왕복엔진 연료 및 연료조절계통		
	왕복엔진 점화 및 시동계통		
	왕복엔진 윤활 및 냉각계통		
	프로펠러	항공기왕복기관 정비	항공기왕복기관정 비실습
	헬리콥터 엔진		
	왕복엔진 장탈 및 교환		
	왕복엔진 정비 및 작동		
	경량항공기 엔진	항공기동력장치 II	항공기동력장치실 습 II
	가스터빈엔진 일반 및 구조		
	가스터빈엔진 연료 및 연료조절 계통		
	가스터빈엔진 점화 및 시동계통		
	가스터빈엔진 윤활 및 냉각계통		
	가스터빈엔진 장탈착 및 교환		
가스터빈엔진 정비 및 작동	항공기가스터빈 기관정비	항공기가스터빈기 관정비실습	
가스터빈엔진 정비 및 작동			
전기· 전자· 계기	기초전기 전자	전자전기개론	항공기전자실습
	항공기 전기계통	항공전자	항공전자기초실습
		항공기 계기계통	항공기계기및전 기장비
	항공기 통신 및 항법계통, 자동비행장치	항공전자장치	항공전자장치실습

제3조 (시험의 실시요령) 제2조의 기준 중 시험 실시 회수를 만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시 한다.

1. 시험은 주임교관이 계획하고 실시한다.
2. 학과시험 실시시간은 각 과목당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3. 실기시험의 실시시간은 60분 내지 120분(단, 장비로 실시하는 실기 시험의 경우는 90분 내지 180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판정기준) 판정기준은 과목별 합격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경우, 과목당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시험문제 출제) 시험문제 출제는 다음과 같다.

1. 출제 : 학과 또는 실기교관은 본인이 해당하는 과목의 문제를 출제한다.
2. 출제방법 : 시험문제 출제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분리하여 실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출제한다.
 - (1) 학과시험의 객관식은 4지 선다형 및 단답형, 주관식 등으로 출제한다.
 - (2) 실기시험은 작업형 실기시험, 면접형 구술시험 또는 도면이나 메뉴얼을 작성 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출제범위 : 학과시험은 항공정비사 표준교재 내용을 참고하고, 실기시험은 한국 교통안전공단의 항공정비사 실기 표준서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수진의 강의 내용을 반영하여 출제한다.

제6조 (시험방법) 시험방법 및 감독은 다음과 같다.

1. 학과시험 :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시험장 좌석은 가능한 1열의 간격을 두고 배치하고 학생 번호 순서로 배치한다.
2. 시험감독자는 학과장 별로 1명 이상을 임명하도록 한다.
3. 실기시험
 - (1) 작업형 : 실기교관 1명과 수험자 1명이 개별적으로 실시 및 평가한다.
 - (2) 구술형 : 실기교관 1명이 5명 이내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여 평가한다.

제7조 (관리 및 보관) 시험문제와 결과물의 보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 교관이 출제한 시험문제는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시험을 실시한 후, 문제지 1부와 시험성적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보관한다.
2. 학과장(책임관리자)은 출제된 시험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의 완결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교과목 교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3. 학과장(책임관리자)은 중간 또는 기말시험마다 시험지를 종합하여 밀봉하고 국토교통부 감독관이 요구 시 즉시 제공한다.

제8조 (시험감독 및 시험장) 시험감독 및 시험장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자는 시험 개시시간 10분 전에 담당 시험장에 입장하여 응시자를 대조 확인한 후 각 시험답안지의 감독위원 대조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2. 시험개시 5분 전에 시험답안지를 배부하고 불참자를 표시해야 한다.
3. 감독자는 학생에게 답안지에 소정의 기재사항 이외의 기재를 금지시키고 특히 기재요령을 교육하거나 칠판에 기록하여 학생이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작성한 답안지는 무효임을 인지시켜야 한다.
4. 학생의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퇴장을 명하고 답안지는 무효 표시를 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5. 시험실시 중에는 학생이 좌석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시간 종료 전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출한 학생은 퇴실시킬 수 있다.
6. 질문이 있을 때에는 거수로 표시하고 조용히 질문을 하도록 해야 한다.
7. 시험 종료가 되면 일제히 답안작성을 중지시키고 퇴실시켜야 한다.

제9조 (채점) 채점은 다음과 같다.

1. 채점은 담당 교관이 하도록 한다.
2. 채점이 완료되면 재확인을 거쳐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3. 채점표는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제10조 (시험응시 요건) 학기별 교육시간의 85% 이상을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 (성적의 판정) 과목별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획득을 합격(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성적미달자의 재교육) 담당 교관은 학생의 시험성적이 합격(통과)점 미달인 경우, 해당 학과 및 실기과목의 교육훈련 시간의 20% 이내에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교관은 추가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시간이 없는 시간이나
일과 후 철저히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그 수업일지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책임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재시험 방법) 학과 및 실기시험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2조에 의한 추가 교육
을 실시한 후 재시험을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시험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한국항공대학교
기술교육원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